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20

발의연월일: 2021. 7. 23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이용호 · 김주영

김정호 • 민형배 • 김원이

홍기원 · 서영석 · 신동근

문정복 · 김종민 · 최인호

김성주 · 어기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하고 있음. 또한 누구든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율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,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율보고가 위축되는 등 항공안전

보고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4신설).

법률 제 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8조의2를 제148조의3으로 하고,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8조의2(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)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1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8조의4(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)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48조의2(국가 항공안전프로그
	램에 관한 죄) 제58조제6항을
	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
	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
	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
	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	<u>에 처한다.</u>
제148조의2(항공안전 의무보고에	제148조의3(항공안전 의무보고에
관한 죄) (생 략)	관한 죄) (현행 제148조의2와
	같음)
<u><신 설></u>	제148조의4(항공안전 자율보고에
	관한 죄) 제61조제3항을 위반
	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
	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
	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	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